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 1조 (이용 계약)

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, 친척 등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도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.

제 2조 (계약 기간)

1.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및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제 3조 (계약 목적)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 4조 (서비스의 내용)

1. 방문요양 :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

- 신체활동지원서비스 : 샤워 등 개인위생활동, 식사도움, 이동도움, 체위변경 등
- 일상생활지원서비스 :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 등
- 개인활동지원서비스 : 외출 시 동행, 개인 업무대행
- 정서활동지원서비스 : 말벗, 생활상담 등 의사소통지원
- 인지활동지원서비스 : 인지활동프로그램,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

2. 방문목욕 :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

- 목욕준비, 목욕실시,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, 배설처리, 목욕 전후 간단한 신체 상태의 관찰 등을 포함.

제 5조 (서비스의 제공 시간)
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1.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2.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구 분	비율(%)	내역
공단부담(장기요양보험료)	85%	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% 중 85%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.
본인부담금	15%(일반)	보험공단이 85%이고 개인 부담금이 15%임.
	6%또는9% (감경)	기타 의료수급권자,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(회귀난치성,만성질환자), 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고시 해당자)
	0%(기초)	기초수급권자

3.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여 첨부하며,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.

제7조 (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

1. 신원 인수인(보호자, 대상자)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2. 신원 인수인(보호자, 대상자)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3. 신원 인수인(보호자, 대상자)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선 및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.
4. 신원 인수인(보호자, 대상자)은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5. 신원 인수인(보호자, 대상자)은 기관에 어르신 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8조 (계약의 해제)

1. 계약 해지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사전에 기관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이용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.
2.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.
 - 1) 수급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
 - 2)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
 - 3)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상습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, 기관과 수급자 간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
 - 4) 수급자의 보호자가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
 - 5)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
 - 6)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
 - 7) 수급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·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
 - 8)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
 - 9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
 - 10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
3.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을 경우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하며, 불이행 시 기관은 강제로 수급해지 조치 한다.
4. 이용규칙 및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· 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